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2272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81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22728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안지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민석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1. 23. E을 흡수합병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이하 위 회사들의 각 상호와 무관하게 ‘원고’라 한다). 피고는 C의 오빠이고,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C의 모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1. C에게 365,927,156원을 이자율 연 2%, 지연배상금 연 25%, 거치기간 24개월을 포함하여 대출기간을 총 60개월로 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6. 4. 10. 사망하였고, C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의해 특정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공동상속인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6. 10. 20. 접수 제37294호로, 2016. 11. 1.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1. 접수 제169070호로 각 2016. 4.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지금까지도 원고의 채무 독촉 및 재판상 대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C가 피고와 사이에 한 이 사건 협의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C의 오빠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는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그런데 C와 C의 남편인 G가 망인의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특별수익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 망인을 비롯한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등 부양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기여분 협의에 해당할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이 사건의 쟁점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즉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만 C의 수증재산이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C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주된 쟁점으로 C의 수증재산이 그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 인정사실

갑 5, 14 내지 17호증, 을 1, 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은행,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망인의 상속재산: 총 362,316,399원(= 107,876,399원 + 249,940,000원 + 4,500,000원)
- 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H은행 계좌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계좌번호	금액(원)
(계좌번호 1 생략)	1,088,467
(계좌번호 2 생략)	71,767,617
(계좌번호 3 생략)	425,002
(계좌번호 1 생략)	34,595,313
계	107,876,399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내역과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소	가액(원)
이 사건 1 부동산	212,500,000
이 사건 2 부동산	33,000,000
경남 함안군 J 임야 84,632㎡ 및 K 임야 657㎡ 중 85,289분의 6,448 지분	4,440,000
계	249,940,000

다) L은 망인이 사망한 뒤인 2016. 4. 11. 망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험금 4,5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특별수익: 총 312,580,000원

가) 피고: 68,000,000원

망인은 생전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거래일자	금액(원)
2013. 10. 30.	6,000,000
2013. 10. 30.	3,000,000
2014. 2. 6.	20,000,000
2014. 9. 26.	20,000,000
2016. 3. 31.	19,000,000
계	68,000,000

원고는 2016. 3. 31. 망인이 M, N, O에게 지급한 금원 총 39,000,000원 또한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M, N, O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 총 244,580,000원

① 망인은 생전에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원을 증여하였다.

거래일자	금액
2012. 5. 7.	500,000
2014. 6. 27.	20,000,000
2014. 11. 19.	10,000,000
2015. 2. 26.	11,280,000
2015. 6. 2.	2,000,000
2015. 6. 18.	2,000,000
2015. 6. 29.	1,800,000
2015. 7. 1.	2,000,000
2015. 10. 22.	20,000,000
2016. 3. 3.	20,000,000
계	89,580,000

② 망인은 C의 남편 G에게 생전 총 15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은 총 674,896,399원(= 상속재산 362,316,399원 + 특별수익 312,580,000원)이고, 이 중 C의 구체적 상속분은 224,965,466원(= 674,896,399 ÷ 3)으로, C의 특별수익 244,580,000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C의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하여 C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협의 당시 C의 무자력 여부, 피고의 선의 등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한현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하구 -아파트동[도로명주소] 부산 사하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292.23㎡

2층 1273.19㎡

3층 1273.19㎡

4층 1273.19㎡

5층 1273.19㎡

6층 1273.19㎡

7층 1273.19㎡

8층 1273.19㎡

9층 1273.19㎡

10층 1273.19㎡

11층 1273.19㎡

12층 1273.19㎡

13층 1273.19㎡

14층 1273.19㎡

15층 1273.19㎡

지하실 1261.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62.2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대 9541㎡

2. 부산 사하구 대 2044㎡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 123,560,000분의 736,624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강서구

[도로명주소] 서울 강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 슬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9.54㎡

2층 150.9㎡

3층 150.9㎡

4층 124.82㎡

5층 104.28㎡

옥탑1층 9.36㎡(연면적 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8.5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 강서구 대 283㎡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83분의 28